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(김종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190 발의년월일: 2017. 11. .

발 의 자: 김종곤 의원

찬 성 자: 남연희의원, 엄경석의원

이상철의원, 이성수의원 신동욱의원, 윤종욱의원 문복란의원, 김달호의원

(8명)

1. 제안이유

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시행(안 제4조)
- 라. 평생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(안 제7조)
- 바.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 우선 구매(안 제8조)
- 사.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다. 입법예고: 2017. 11. 14. ~ 11. 19.(6일간)

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 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노인"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 - 2. "노인 일자리 창출"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)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
- 2.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3.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4.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·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협조·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5조(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)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,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)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, 선발절차, 참가 제한,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정한다.
- 제7조(보험가입)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생산품 우선 구매)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,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예산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0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관계법규>

□ 노인복지법
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 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 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
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20. 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발의자: 2017. 11. 13. / 김종곤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17. 11. 24.

다. 상정일자: 2017. 12. 6.

(제2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김종곤 의원

나. 제안이유

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시행(안 제4조)
- 라. 평생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(안 제7조)

- 바.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 우선 구매 (안 제8조)
- 사.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다. 입법예고: 2017. 11. 14. ~ 11. 19.(6일간)

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「노인복지법」제23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 본법」제11조에 따라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 으로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8월 말 14.02%로,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**고령사회**에 진입하였으나,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7.7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,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, 이른 정년에 공적연금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등 노인 빈곤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정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여지며, 노인들이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 제7조 보험가입, 제9조 예산지원 등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- 7. 토론요지: 없음.
- 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